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19가단235584(본소), 2019가단14930(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나62596(본소), 2022나62602(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19가단23558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이원석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2. 6. 9.

판결 선고2022. 7.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220,908원 및 그 중 81,550,476원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592,832원 및 그 중 28,922,400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6,424,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7,34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방점검업과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5.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소재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내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70,8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부터 2018. 1. 20.까지, 하자보수보증 보증금율 3% 11,124,000원, 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 4. 30.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은 이후 또 다시 2018.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8.자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제목 : 정산관련의 건

1. 귀사(이 사건 원고)는 당사(이 사건 피고)와 2017. 4. 5. '용산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사는 공사 중 과기성임에도 불구하고 귀사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의 퇴사로 수차례 공사를 지연시켰으며, 귀사의 공사 기한인 2018. 6. 30.을 훨씬 초과된 2018. 9. 7. 당 현장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3. 또한 귀사는 계속적인 하자발생으로 수 차례 연락을 해야만 하자처리를 겨우 받는 상황이니, 앞으로 하자발생에 관한 사항 또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당 현장의 소장과 2019. 1월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정산 내용은 계약금액 370,800,000원(VAT포함)에서 현장정리 미흡으로 인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6,300,000원 공제, 준공 관련 미조치로 인한 자재구매 7,502,000원 공제, 2018. 12. 31. 기준 하자로 인한 보수작업 13,622,500원 공제, 지체보상금(2018. 6. 30. 기준 지체일수 69일) 76,755,600원 공제하며, 세금계산서 추가발행으로 인한 부가세 증액 1,836,364원을 포함하여 총 정산금액은 267,456,264원입니다.

5. 현 정산상 당사는 귀사에게 과지급이 되었음을 알리며, 과지급된 20,700,736원을 당사에게 2019. 1. 25.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3억 70,800,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억 90,157,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0,6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8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세금계산서 과잉발행으로 인한 차액분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가 면세였던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10,8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가 위 10,800,000원보다 4,577,908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금 4,577,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건비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담당하는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사정으로 피고의 담당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위 공사기간이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피고의 담당공사 지연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더 연장하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어, 원고는 2018. 7. 26.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건비 56,203,17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된 인건비 56,203,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설계도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15,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행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억 56,424,078원(= 위 80,643,000원 + 위 4,577,908원 + 56,203,17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행하여진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8. 9. 7. 이루어진 점, ② 피고가 2019. 1. 18.자로 원고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를 전제로 한 하자보수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인 점, ③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에서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나머지 공사대금 80,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물에 추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보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 보증금율 3%

11,124,000원, 책임기간 2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2018. 7. 26.경 원고의 하자보증기간이 개시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0. 7. 26.경에는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이행증권의 발생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세금계산서 과잉발행으로 인한 차액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2017. 4.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제11호증의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 30%, 면세 70%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15,377,9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추후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초과금 4,577,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건비 청구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2018. 2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의 추가인건비 56,203,17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 4. 30.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은 이후 또 다시 2018. 6. 30.까지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현장관리소장을 포함한 인건비로 2018. 2월분

급여부터 2018. 7월분 급여 합계 56,203,1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에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직원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인건비는 3명분의 2018. 2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약 4개월 또는 6개월분 급여로 합계 56,203,170원인데, 원래 공사기간이 약 10개월 가량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3억 70,800,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인건비는 상당히 과한 면이 많은 점, ③ 원고는 2018. 6. 30. 이후 2018. 7. 26.까지의 공사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등의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인건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추가공사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누락 등을 원인으로 주방싱크대 세탁기 설치의 추가배관, 다용도실 추가 바닥배수관, 수전설치, 주방후드 및 욕실팬 배기덕트 변경 추가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사실, 위 추가공사의 비용은 16,58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로 원고가 구하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서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총액제 계약으로 별도의 추가비가 없는 것으로 하였고, 건축주 또한 원고로부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특수조건에 의하더라도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는 설계누락을 원인으로 한 것인 점, 위와 같이 15,000,000원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를 원고가 피고의 요구 내지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 또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인으로 합계 100,220,908원(= 위 나머지 공사대금 80,643,000원 + 위 부가가치세 초과금 4,577,908원 + 추가공사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불확실한 경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참조). 아래 3. 가.의 (1)항에서 살피는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8,670,432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18,670,432원은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이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위 18,670,432원을 제외한 나머지 76,972,568원(= 위 80,643,000원 + 15,000,000원 - 위 18,670,432원) 및 위 부가가치세 초과금 4,577,908원 합계 81,550,476원(= 위 나머지 76,972,568원 + 위 초과금 4,577,908원)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 3, 11, 15,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 G의 각 하자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후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아래 표에 금액 기재가 있는 항목에 관하여 하자가 남아 있다.

1	1층 천장, 경량천장 재시공, 소방배관 누수, 강화마루 발코니 천장 보수 자재 및 보수, 2층 복도 알람벨브실 배관 오시공	5,079,1941) 감정사항 1-1 부분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292,111원으로 산정함
2	H호, 화장실 세면대 파손 밀착불량시공 재설치 자재 및 보수	99,000
3	2층 소화전, 소화전 페인트 및 미장 미시공	342,778
4	지하 펌프실, 펌프실 누수 물제거 작업펌프 2개월 장비 임대	486,970
5	I호, 화장실 문 개폐불량 원인 세면기 위치 오기 부착 바닥타일 재시공	2,180,383
6	J호, 연소기 구매, 보일러 후렉시블 연결공사	1,934,362
7	J호, 자동식 소화기 미설치	574,358
8	2층 복도, 알람벨브실 배관 오시공	2,236,283
9	폐기물 산정, 이 사건 공사로 발생된 전체 폐기물을 산정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314,104
10	옥상 통기관 미시공	4,477,000
11	K호 천정누수	946,000
합계	18,670,432	

피고는 위 18,670,432원을 초과한 20,585,267원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18,670,432원을 초과한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이 부당하게 과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원고가 직접 재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재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670,4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7. 1.부터 2017. 9. 7.까지 69일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한 지체상금 계산 내역은 76,755,6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체상금 76,75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4. 30.까지로 연장하였고, 2018. 4. 30.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5. 31.까지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은 이후 또 다시 2018. 6. 30.까지로 연장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마지막으로 변경된 공사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2018. 7. 26.까지 26일간에 대한 지체상금 28,922,400원(= 26일 × 3% × 계약금액 37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일수 69일은 이 사건 공사가 행하여진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2018. 7. 26.경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2018. 7. 1.부터 위 2018. 7. 26.까지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30. 이후 2018. 7. 26.까지의 공사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등의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592,832원(= 위 하자보수금 18,670,432원 + 위 지체상금 28,922,400원) 및 그 중 28,922,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2018. 9.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승우

1) 감정사항 1-1 부분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292,111원으로 산정함